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과 유엔총회 본회의의 북한 인권 상황 ICC 회부결의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인용 8, 기각 1의 압도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18일(현지시간) 제69차 유엔총회 본회의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결정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에 앞서 11월 18일 제3위원회는 같은 내용을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통과시켰는데 찬성표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이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 결의 역시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국회는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을 10년째나 방치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 북녘동포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위헌적 태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우리 한변은 이미 2013. 4. 25.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차제에 우리는 헌재에 대해 국회의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